번호

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청원 요지

**○ 동성애 비범죄화는 거스를 수 없는 국제인권법의 원칙입니다**

1994년 유엔 자유권위원회, 2010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, 2011년 유엔인권최고대표는 동의된 동성애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이 「시민적,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」 등 국제인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그러한 법률의 폐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.

**○ 군인이라 할지라도 기본적 인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**

이성간의 합의된 성적 행동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동성 간의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합니다. 군인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는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.

**○ 이러한 법률 존재 자체가 인권을 억압하고 차별과 편견을 조장합니다**

유엔 자유권위원회는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법률은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그 존재 자체로 성소수자 개인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합니다. 또한 이러한 법률은 그 직접 적용 당사자를 넘어 성소수자 전체에게 낙인을 가하고,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며, 우리 사회의 인권과 평등, 조화와 다양성의 가치를 훼손합니다.

**○ 입법정책상 군형법 제92조의6는 그 필요성이 없습니다**

군형법의 개정으로 성폭력 범죄가 비친고죄화한 이상, 성폭력 범죄를 비친고죄화하는 기능을 주로 수행해 왔던 이 조항은 더 이상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. 합의에 의한 행위에 대한 적용례는 연 평균 1건 정도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처리되고 있습니다.

**○ 기본적 인권의 보장은 입법부의 중요한 직무입니다**

국회의 기본적 직무 중 하나는 입법 활동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. 위 조항을 폐지하는 것은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, 우리나라 인권 신장에 커다란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.

**이상과 같은 이유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청원합니다**

**청 원 인**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연번 | 성 명 | 주 소 | 서명 또는 날인 | 비고 |
|  |  |  |  |  |
|  |  |  |  |  |
|  |  |  |  |  |
|  |  |  |  |  |
|  |  |  |  |  |

\* 연번은 비워두시면 추후에 기재하겠습니다.